

창원지방법원 2016. 8. 23 선고 2015나36567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16. 8. 23 선고 2015나36567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11. 19 선고 2015가단413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변론 종결 2016. 7. 12.

판결 선고 2016. 8. 23.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11. 19. 선고 2015가단413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함안군 C 대지 46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13, 9, 10, 12,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3㎡ 지상에 있는 블록조 담장과 피고 소유 동산을 각 철거 및 수거하고, 별지 감정도 표시 10, 11, 12,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2㎡ 지상과 7, 8, 9, 13,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5㎡ 지상에 있는 조적조(벽돌) 슬라브지붕 2층 주택을 각 철거하고, 위 (나)부분 23㎡, (다)부분 2㎡, (라)부분 5㎡를 각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흥기

판사정연희

판사김선중

별지